

航空障碍物 標識設置에 関하여

交通部 서울地方 航空管理局 管制所 제공

航空機의 航行 安全을 위해 航空法 第40條, 第41條 및 同法 施行 規則 第 133條, 第 134條, 第 135條, 第 140條, 第 141條, 第 142條와 國제 민간항공조약 부속서 第14條에 의거 設置 운용하고 있는 航空障碍物 標識에 있어 建物 및 其他 施設 設備時 임의 설치, 또는 비설비 방치로 인해 航空障碍物標識(주간 및 야간) 관리 운용상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航空機 安全 運航의 不安全 要素가 되고 있어, 建物 및 其他 設備 施設 當局의 航空障碍物 標識 쪽부검사를 받도록 関係機關에 要望하고 있는 바, 특히 會員의 高層建物 設計時 有意할 사항으로 「航空法 関係條文」「施行規則」「設置基準」 및 「航空機障碍物 設置許可申請書」의 樣式을 紹介한다.

航空法 関係條文

◇ 航空法

第40條[障碍物의 制限等] ① 누구든지 公公用의 飛行場에 對하여 第34條[第36條 第2項의 規定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包含한다]의 公告가 있는 後에는 그 公告에 表示된 進入表面, 水平表面 또는 転移表面(이들이 投影面이 一致하는 部分에 関하여는 이를 중 가장 낮은 表面으로 한다.) 위에 나오는 높이의 建造物(公告한 當時 建造中에 있는 建造物의 當該建造工事에 関係되는 部分을 除外한다.) 植物 其他의 障碍物을 設置 裁培하거나 放置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假設物 其他 交通部令의 定하는 障碍物(進入表面 또는 転移表面에 걸리는 것은 除外한다)로서 飛行場 設置者の 承認을 얻어 設置, 放置하거나 使用開始 豫定日前에 除去할 障碍物에 對하여는 例外로 한다.

② 飛行場 設置자는 前項의 規定에 違反하여 設置, 裁培 또는 放置한 障碍物(成長하여 進入表面, 水平表面 또는 転移表面위에 나올 植物을 包含한다)에 所有權 其他의 權利를 가진 者에 對하여 當該 障碍物의 除去를 要求할 수 있다.

③ 飛行場 設置자는 第一項의 公告當時 現存하는 障碍物로서 進入表面, 水平表面 또는 転移表面 위에 나오는 障碍物(公告當時 現存하는 植物로서 成長하여 進入表面, 水平表面 또는 転移表面 위에 나오게 된 것 및 公告當時 建造中에 있는 建造物로서 그 建造工事에 依하여 이 表面위에 나오게 된 것을 包含한다)의 所有權 其他의 權利를 가진 者에 對하여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依하여 普通 생길 수 있는 損失을 補償하고 當該 障碍物의 進入表面, 水平表面 또는 転移表面위에 나오는 部分의 除去를 要求 할 수 있다.

④ 前項의 障碍物 또는 그것이 있는 土地의 所有者는 그 障碍物의 除去로 因하여 그 障碍物 또는 土地의 使用収益에 懸著한 困難이 생길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飛行場 設置者에 對하여 그 障碍物 또는 土地의 買收를 要求할 수 있다.

⑤ 第3項의 规定에 依하여 除去될 障碍物로서 當事間의 協議의 不成立으로 因하여 當該 障碍物을 除去할 수 없게 된 境遇에 交通部長官은 特히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飛行場 設置者에 對하여 當該 障碍物의 除去를 命할 수 있다.

⑥ 前項의 境遇에 交通部長官 또는 飛行場 設置者는 障碍物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에 對하여 除去로 因한 損失을 補償하여야 한다. 損失補償의 金額은 航空審議會의 同意를 얻어 交通部長官이 決定한다.

⑦ 前項의 決定에 對하여 異議가 있는 者는 土地 収容法의 规定에 따라 行政訴訟을 提起할 수 있다.

第41條 (航空障碍燈의 設置等)

① 飛行場 設置者는 交通部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進入表面, 水平表面 또는 転移表面의 陡形면과 일치되는 区域内에 있는 物件(第4項의 规定에 依하여 航空障礙 等을 設置할 物件은 除外한다) 으로서 交通部令으로 定하는 物件에는 航空障碍燈을 設置하여야 한다.)

② 交通部長官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前項과 第四項에 規定하는 物体以外의 物体로서 航空機의 航行의 安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곳에 航空障碍燈을 設置해야 한다.

③ 前2項의 物体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는 飛行場 設置者 또는 交通部長官이 行하는 航空障碍燈의 設置를 거부할 수 없다. 이 境遇에 物体의 所有者 또는 占有者에게 損失을 가져온 때에는 交通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그 損失을 補償 한다.

④ 누구든지 地表 또는 水面으로부터 60m 이상의 物件을 設置하는 者는 交通部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航空障碍燈과 주간 장해 표지를 設置하여야 한다. 다만 交通部長官의 許可를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⑤ 航空障碍燈과 주간장애표지 설치자는 交通部令이 定하는 바에 따라 航空障碍燈과 주간장애표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施行規則

第 133條 (航空障碍燈의 種類의 設置基準)

航空障碍燈은 高光度의 航空障碍燈과 低光度의 航空障碍燈으로 하고, 그 십지의 基準은 다음과 같다.

1. 航空障碍燈의 性能은 다음과 같은 것일 것.

ㄱ) 高光度의 碍障燈

① 燈光은 航空的의 명렬로서 光源의 中心을 포함하는 水平面下 15도에서 上方의 모든 方向에서 식별할 수 있는 것일 것.

② 1分間의 明滅回数는 20내지 60일 것.

③ 最大光度는 2천 칸데라以上(最大光度가 2천 칸데라 以上의 燈火를 記置하는 것이 技術적으로 곤란하다고 交通部長官이 認定한 경우에는 交通部長官이 定한 光度)

ㄴ) 低光度의 航空障碍燈

① 燈光은 航空的의 부등광으로서 光源의 中心을 포함하는 水平面下 15度에서 上方의 모든 方向에서 식별할 수 있는 것일 것.

② 光度는 20칸데라以上의 것일 것.

2. 航空障碍燈의 다음의 위치에 모든 方向에 航空機에서 当該物件이 인식되도록 1個以上 設置할 것.

ㄱ) 物件(피뢰침은 除外한다. 以下 이 号에서 같다.)의 정상, 다만 연틀 기타의 物件으로서 그의 정상에 航空障碍燈을 設置한 경우에 当該 燈火의 機能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정상에서 下方 1.5미터 내지 3미터의 사이 進入表面 또는 転移表面의 下方에 있는 物件에 있어서는 이를 表面上에 가장 가까운 위치로 할 것.

ㄴ) 45미터를 초과하는 높이의 物件에 있어서는 당해 物件의 정상에서 地上까지의 사이에 수직거리로 45미터以下の 거의 동간격의 위치일 것.

第 134條 (航空障碍燈의 管理方法)

(1) 第41條 第2項의 규정에 의한 航空障碍燈을 設置하여야 할 物件은 다음과 같다.

1. 進入表面 또는 転移表面 또는 水平表面에 接近한 物件

2. 前号에 제기한 物件 以外의 것으로서 航空機 航行의 安全을 해할 우려가 있는 物件

(2) 法 第41條 第3項의 규정에 의한 손실 보상의 금액은 航空審議委의 審議를 거쳐 交通部長官이 결정한다.

第 135條 (航空障碍燈의 管理方法)

法 第41條의 규정에 의한 航空障碍燈은 다음의 方法에 依하여 管理하여야 한다.

1. 航空障碍燈의 改修, 청소 등을 행함으로서 이를 完全한 상태로 보전할 것.
2. 建築物, 植物 其他의 物件에 의하여 航空障碍燈의 機能을 손상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当該 物件의 제기등 必要한 조치를 할 것.
3. 不得已한 事由로 因하여 航空障碍燈의 운용이 정지하거나, 航空障碍燈의 機能이 손상될 경우와 当該 航空障碍燈의 운용 또는 機能을 복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交通部長官에게 通報할 것.
4. 天災 其他의 事故로 因하여 航空障碍燈의 운용에 지장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복구에 노력함과 同時に 그 운용을 될 수 있는대로 계속하는 등, 航空의 危害 예방을 위하여 적당한 조치를 할 것.
5. 航空障碍燈에는 예비품으로써 전구 가용면을 비치할 것.
6. 航空障碍燈은 夜間 또는 계기 기상 상태하에 있는 경우에는 그 점등을 계속할 것.
7. 45미터 以上의 높이에 있어서 45미터를 초과하는 폭이 있는 物件 또는 進入表面, 転移表面, 水平表面에 근접한 부분의 폭이 45미터를 초과하는 物件에 있어서는 그 개형을 표시하는 위치로서 또한 인접한 위치가 水平거리로 45미터를 초과하는 위치일 것.
8. 다음의 物件中 항공기의 方行에 특히 위험하다고 交通部長官이 인정한 것으로서 前号 7)에 계기하는 위치(가장 낮은 위치를 제외한다)에는 高光度의 航空障碍燈을 設置할 것.
 - ㄱ. 90미터 以上의 높이의 物件
 - ㄴ. 까스탱크, 저유조 기타 航空機가 충돌한 경우에 특히 災害의 우려가 있는 物件
 - ㄷ. 航空機가 빈번히 저공 비행을 행하는 通路에 있는 物件
 - ㄹ. ㄴ 또는 ㄷ에 계기한 航空障碍燈을 設置할 위치가 他の 인접한 物件에 依하여 차폐될 경우에는 ㄴ 또는 ㄷ의 규정에 불구하고 当該物件에 인접하는 物件의 대응하는 위치(航空障碍燈을 設置하여야 할者が 当該인접물건에 대하여 権利가 있는 경우에 限한다.) 일 것.
9. 다음의 物件에 있어서는 第7호 및 前号의 규정에 불구하고 高光度의 航空障碍燈을 交通部長官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設置할 것.
 - ㄱ. 산구와림
 - ㄴ. 광범위에 걸친 물건으로서 저광도의 航空障碍燈에 의한 表示가 부적당하다고 交通部長官이 認定한 것.

第 140條 (畫間 障碍標識設置物件)

法 第41條 第4項의 規定에 依하여 주간장애표지를 設置하여야 할 物件은 다음에 계기하는 것. (交通部長官이 畫間障碍標識을 設置할 必要가 없다고 認定하는 것을 제외한다.)

1. 연통, 철탑, 柱, 其他의 物件으로서 그 높이에 비하여 그 폭이 좁은 것(그 지선을 포함한다)
2. 골조구조의 물건
3. 가공선과 비류기구(그 지선을 포함한다)

第 141條 (畫間 障碍標識의 種類와 設置基準) 法 第41條 第4項의 규정에 의하여 設置하는 畫間 障碍標識는 도색기 또는 標識物로 하되 그 設置基準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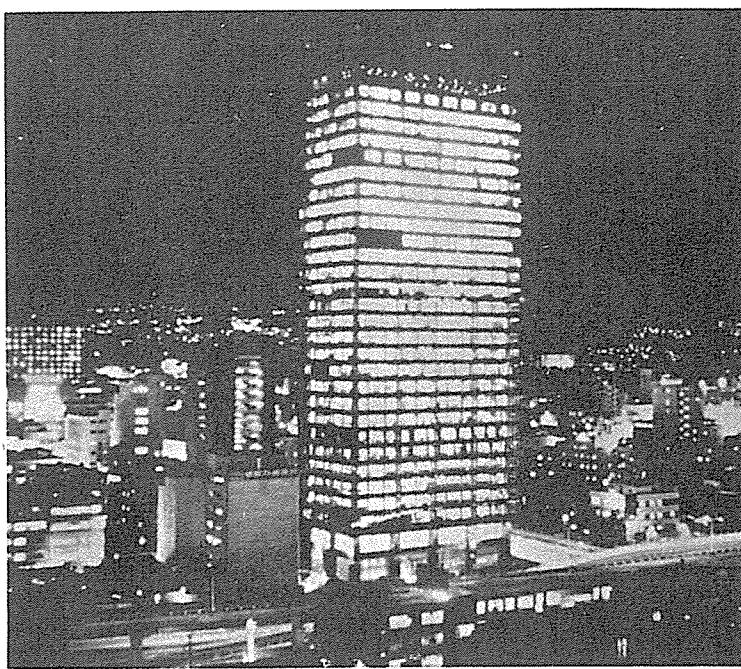
第 142條 (畫間 障碍標識의 管理方法)

法 第41條 第4項의 畫間障碍標識는 다음 方法에 依하여 管理하여야 한다.

1. 畫間 障碍標識을 前條의 基準에 적합하도록 유지할 것.
2. 畫間障碍標識(기를 제외한다)에 기능을 손상하는 지장(그 기능의 회복에 7日以上을 要할 때에 한한다)이 생긴 경우와 그 기능이 회복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交通部長官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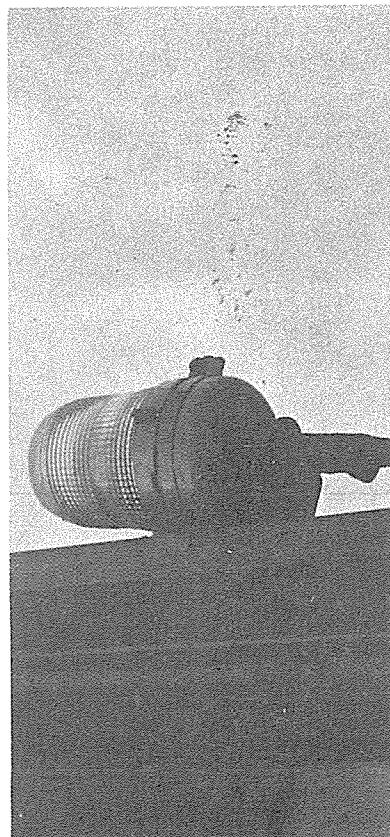
臺間障碍物의 設置基準

物件의 種類	臺間障碍物標識의 種類	設置의 方法
① 2 대지 4 에 계기하는 物 件 以外의 物件	ㄱ. 폭이 1.5미 터 미만의 부분 과 그 이외의부 분으로서 그 수 직방향의 깊이 가 1미터 미만 의 것	도 색 (塗色) 赤 또는 黃色의 1色으 로 도색할 것. 당해 부분의 수직방향 의 길이가 90미터 미 만의 경우에는 그 길 이 7등분
	ㄴ. 그이외의 부분.	90미터이상 180미터 미만의 경우에는 그 길 이 9등분하며 180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길이 를 약 20미터의 등 간 격으로 구분하고 각부 분은 최상부로부터 赤 과 白 또는 黃色과 白 의 순에 번갈아 도색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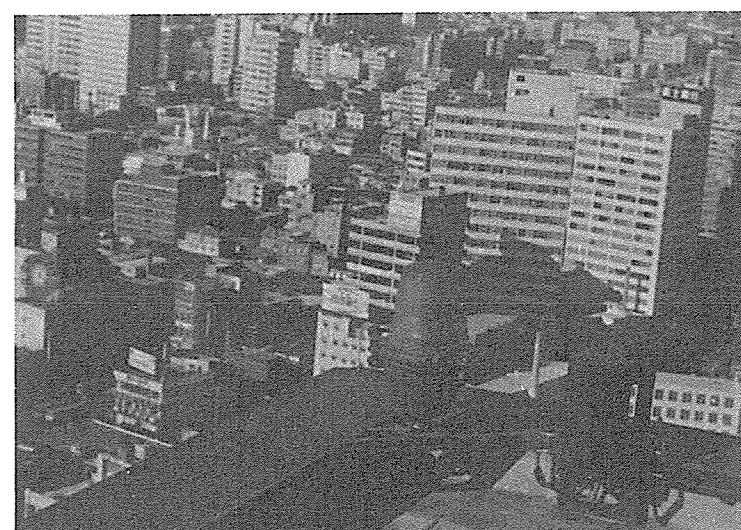
● 三一路 빌딩屋上에 設置한 航空障碍燈 ①②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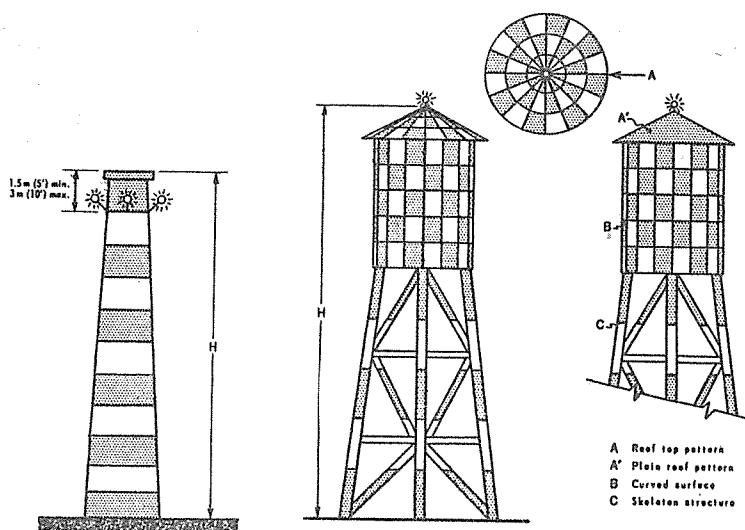
② 지 선	기	단면이 0.6미터 이상의 장방형 또는 정방형으로서 赤 또는 黃赤 의 一色 또는 대각선에 의하여 2 꾼된 각 부분의 赤과 白 또는 黃 赤과 白의 기를 지선의 中央에 달 것.
③ 가공선	표 시 물	직경 0.5미터 이상의 구형으로서 赤黃赤 또는 白의 1色인 표시물 의 1.5미터의 전 간격에 설치할 것.
④ 기류기구(지 선을 제외한다)	도 색	배경의 대비에 있어서 명확히 식 별할 수 있도록 도색할 것.



● 로얄호텔 屋上에 設置한 航空障碍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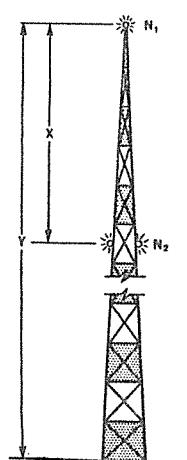
본 적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신고 번 호		장애물종류	
신고 년월 일		설치년월일	
설 치 자		관 리 자	
소 재 지			
좌 표	북 위	동 경	
비행장과의관계	거 리	좌 방 위	
표 고	지면상	해 면 상	
호 텔 명			운용시간
1. 航空法 第40條, 第41條, 同施行規則 第133條, 第 134條, 第 135條, 第 141條, 第 142條에 의거 航空障碍物 設置 許 可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1974年 月 日 신청인 인			
서울地方航空管理局長 貴下			
구비서류 (1) 도면(상부, 전면, 측면, % ₂₀₀) (2) 지도 설치장소 표시 % ₁₀₀₀)			





150 FT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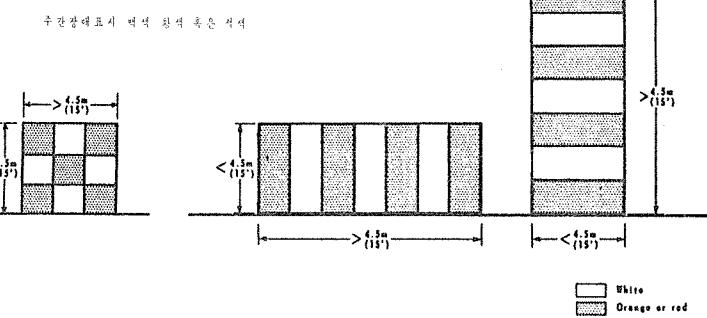
아래의 15m 이상 세로지는 중간등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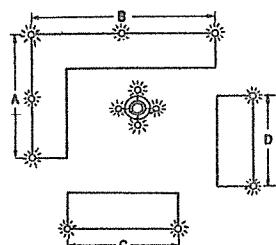
$$\text{Number of lights} = N = \frac{V(\text{metres})}{45}$$

$$\text{Light spacing} = X = \frac{V}{N} \leq 45\text{m}$$

한 층별 지면 높이 세 133과 3층 강조
우상위 연자회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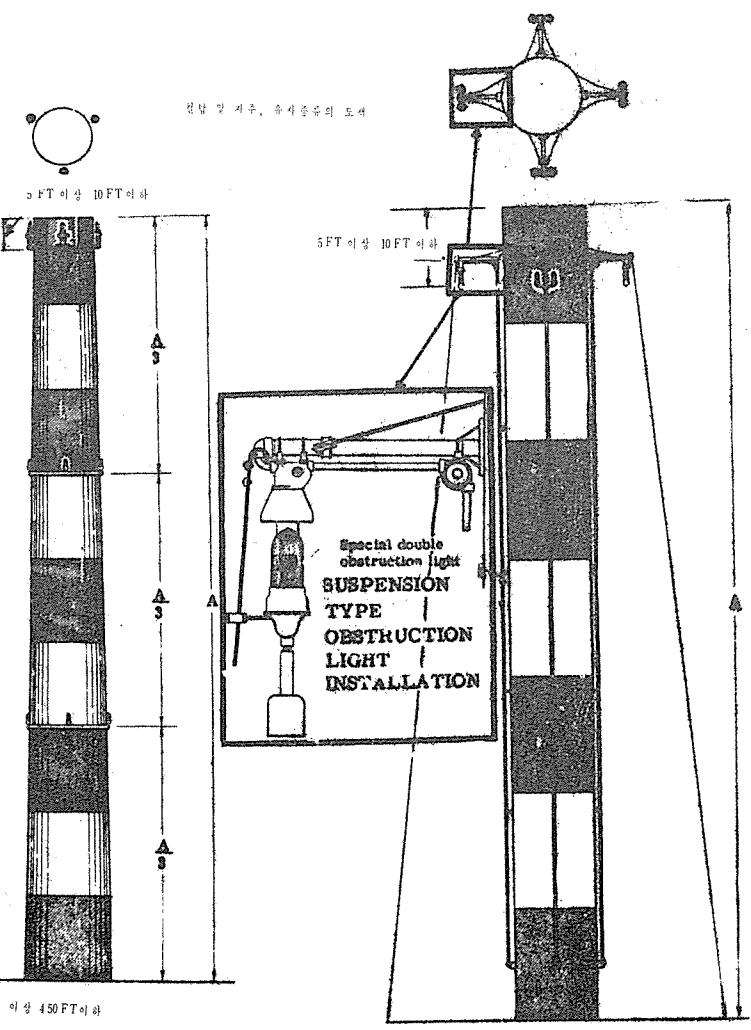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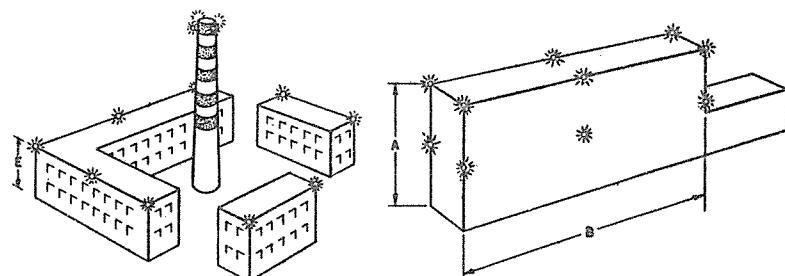


White
Orange or r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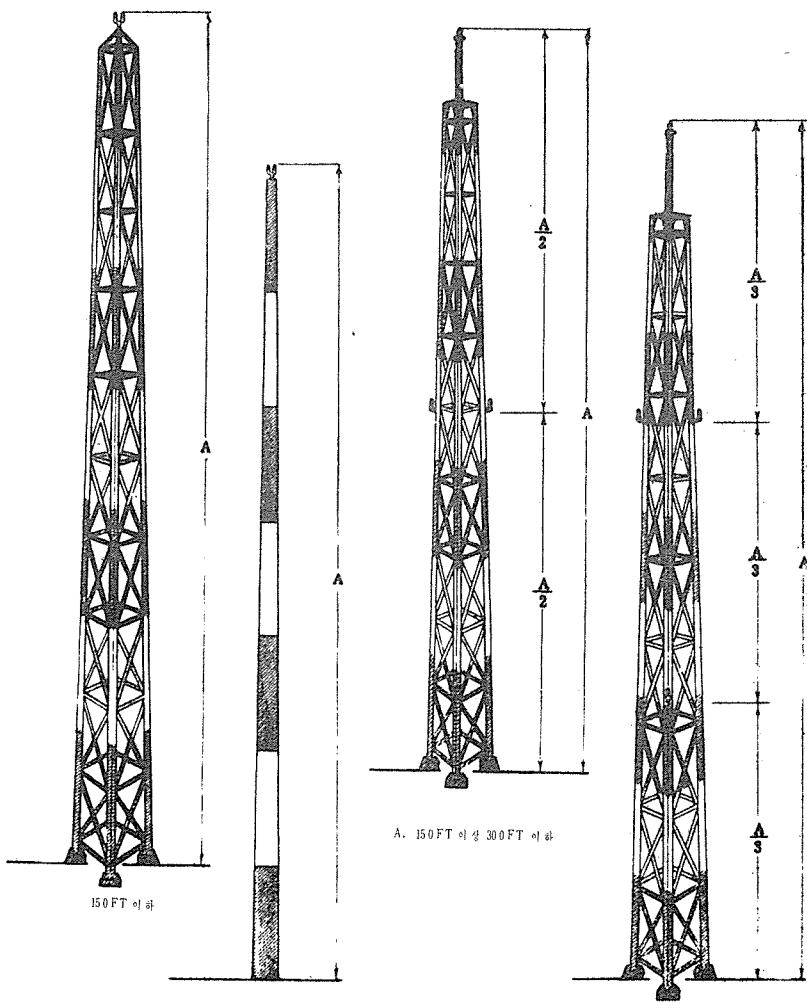


아래층에 등 조사

A, B ~ 45 m (150') ~ 90 m (300)
C, D, E ~ 45 m (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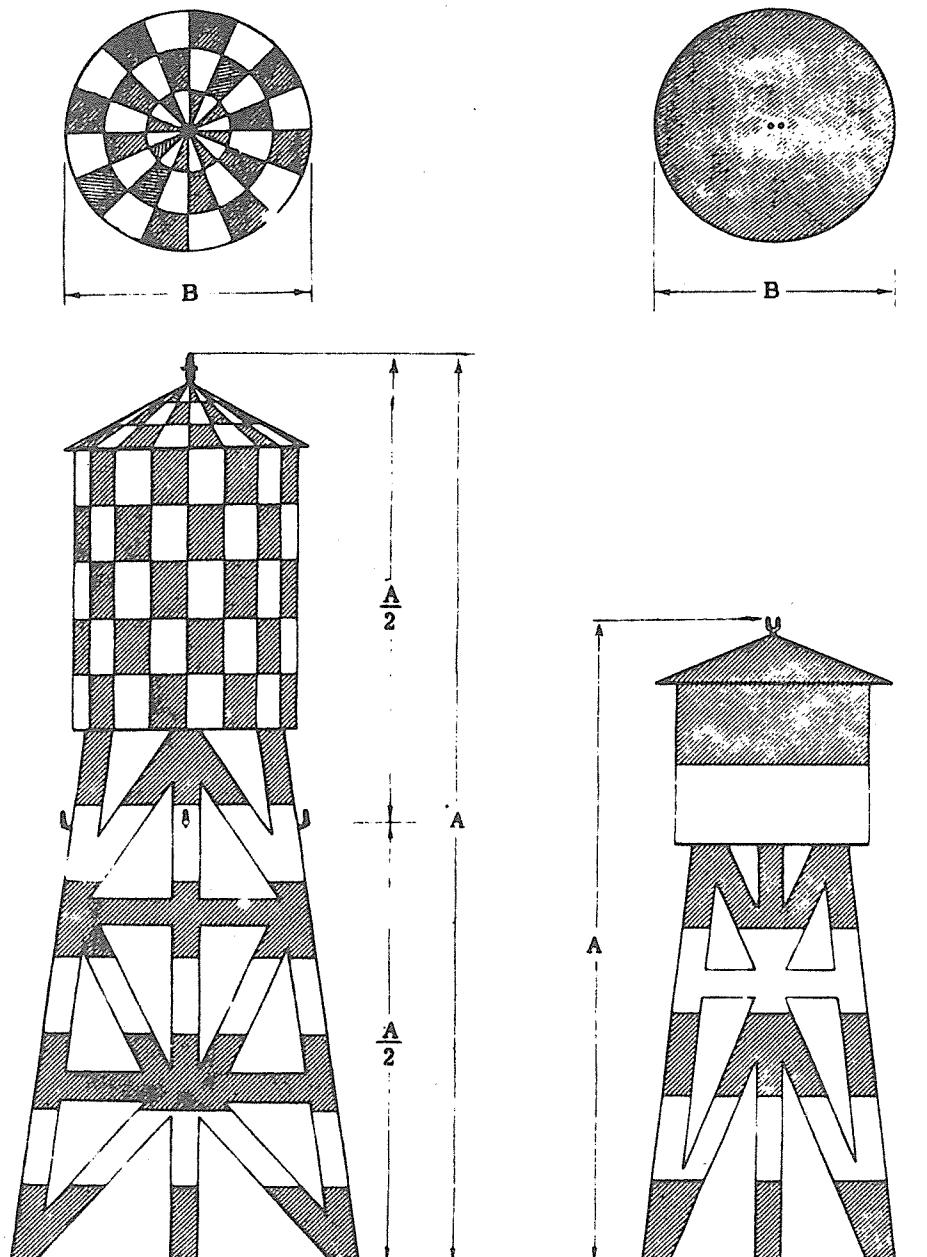


이상 450 FT 이하



A. 150 FT 이상 300 FT 이하

A ~ 300 FT 이상 450 FT 이하



LIGHTING

A-More than 150 ft. but
not more than 300 ft.
B-Not more than 150 ft.

MARKING

A and B- 15 ft.
or more

LIGHTING

A and B-Not more
than 150 ft.
A-5 ft. or more
B-Less than 15 ft.

MARKING

PAINTING AND LIGHTING OF WATER TOWERS AND SIMILAR OBSTRUCTIONS